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서 울 고 등 법 원

춘천제1행정부

판 결

사 건	(춘천)2021누895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11. 2. 선고 2019구합51923 판결
변 론 종 결	2022. 6. 15.
판 결 선 고	2022. 8.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340,748,870원, 지방교육세 31,348,560원, 농어촌특별세 15,674,2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계약(원고와 T 간 F 정상화를 위한 용역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원고와 D인 점, 이 사건 제1토지는 독립성이 결여된 사업부지이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일체로서 살펴보아야 하는 점, 원고와 D이 사전 담합을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통일적으로 취득하고 D의 각종 채무와 부담금 등을 승계한 점, D이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한 점, 이 사건 쟁점비용은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저가 매도의 대가인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 기록 전부를 다시 살펴보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검토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2. 보완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4.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별지 1, 2, 3, 4 포함)를 인용한다.

2. 보완하는 부분

○ 5쪽 2행부터 6쪽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과세물건으로 이 사건 제1토지 외에 이 사건 제2, 3토지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면서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주장한다(피고 2021. 8. 4. 자 준비서면 참조).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 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 2, 3토지는 취득일, 면적, 필지의 수, 과세표준 등이 모두 다르고,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각각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은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 새로운 과세물건으로서 이 사건 제2, 3토지를 추가하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별지 2 외에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사항을 비롯하여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각종 비용이 별지 3과 같다는 주장도 하였다(별지 2와 별지 3은 피고가 주장하는 송수관로 관련 비용 외에도 상당 부분이 중첩된다). 다만 피고가 별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2에서 별지 3으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한다는 명시적인 주장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별지 2에 근거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와 피고 모두 별지 2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롭게 제시된 별지 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는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물건은 이 사건 제1토지이고 별지 2와 같은 합계 6,815,795,572원(특히 그중 이 사건 쟁점비용 6,655,141,844원)이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기존 처분사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 10쪽 8행 중 "수헹"을 "수행"으로 고친다.

○ 11쪽 아래에서 3행 중 "(이 사건 쟁점비용)"을 "(그중 이 사건 쟁점비용은 6,655,141,844원)"이라고 보완한다.

○ 14쪽 11행 내지 13행 "피고는 2016. 6. 2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D이 체납한 지방세를 대위변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조건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를 다음과 같이 보완한다[원고는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다].

『피고는 2016. 6. 29.경 D 등에 '원고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자 지위 확보 후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할 경우 이 사건 계약과 같이 ① 원고가 4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고, ② D이 1억 1,000만 원을 동시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③ 원고의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동의하며, ④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해 압류 말소 등기 촉탁할 것을 조건부로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통보서를 송부하였다.』

○ 15쪽 아래에서 3행과 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이 법원은 선행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D의 사업양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판단하고 피고가 2017. 9. 5. 원고를 D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한 지방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0. 12. 21. 선고 (춘천)2019누1079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⑨ 피고는 변론 종결일 이후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이 사건 제1토지 공매 공고(갑 제8호증의 4) 중 기타 주요 사항으로 '공매 대상 자산의 명도 및 인도 책임, 제한 물권 등 일체의 법률적, 사실적 제한 사항 및 권리 관계의 말소 책임은 매수자가 부담함'이 기재되어 있고(이하 '이 사건 공고 사항'이라 한다), 수의계약 체결 요청서(갑 제9호증)에 매수 조건은 공매 공고의 공매 조건과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추가로 거론하였다. 이 사건 공고 사항은 이 사건 쟁점비용과 같은 각종 비용을 원고가 수락·부담한다는 취지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고 사항은, 예컨대 공매 대상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점유와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피해나 불이익을 매수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이지(참고로 원고는 별지 2 순번 1번과 같은 근저당권 말소 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인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쟁점비용을 공매 조건으로서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 이 사건 쟁점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더욱이 이 사건 공고 사항은 이 사건 제1토지의 공매에만 특유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공매 공고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문구라고 보인다.

⑩ 요컨대 피고의 주장은 대체로 이 사건 제1, 2, 3토지가 사실상 하나의 통일된 사업부지이고, 이 사건 쟁점비용이 일체로서의 이 사건 제1, 2, 3토지와 관련이 있으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처분의 과세물건은 이 사건 제1토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제2, 3토지를 추가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와 D이 담합하였고, D이 손실을 감수하고 원고에게 저가 매도를 하였으며, 이 사건 쟁점비용이 저가 매도의 대가라는 주장도 반복하여 제기한다. 이 사건 계약의 경위와 내용에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도인은 이 사건 M은행들이다. 더욱이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M은행들과 원고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통제할 수 있었다는 점이나 이 사건 M은행들이 손실을 감수한 채 원고에게 저가 매도를 하면서 원고가 D에 이 사건 쟁점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동의 내지 수락하였다는 점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분명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31

판사 [redacted]